

반납금 납부신청서

※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	
	전화번호(주택)	(회사)	(이동전화)
	주소 우편번호(-)		

재취득일자	
-------	--

가입종별	[]사업장가입자 []지역가입자 []임의가입자 []임의계속가입자
------	---

반납금 납부 방법	[]일시납부 []분할납부(회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전자고지 신청	[] 전자우편(e-mail) / 전자우편주소: _____
	[]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

자동이체 신청	금융기관명		계좌번호	
	예금주 성명		예금주 주민등록번호	
	자동이체 시작월분	(예시) 2014년 4월분으로 신청하실 경우, 2014년 5월 25일경 최초 출금 ※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(예금주)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

「국민연금법」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"성명"란 및 "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를 적으십시오.
2. "주소"란에는 "반납금납입고지서"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(실제 거주하는 주소)를 적으십시오.
3. "재취득일자"란에는 「국민연금법」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날짜를 적으십시오.
4. "가입종별"란에는 재취득 당시의 가입종별란에 "✓"표시를 하십시오.
5. "반납금 납부방법" 중에서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.

※ 분할 가능 횟수

-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: 3회 이내

-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: 12회 이내

-가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: 24회 이내

6.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"전자우편(e-mail)"란 또는 "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"란에 "✓" 표시를 하고,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(e-mail)를 적으십시오.
7. "자동이체 신청"란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, 우체국, 농협·수협 등의 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,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(예금주)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청구금액에 비하여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동 잔액에 대하여는 출금되지 않습니다.
 - 자동이체(신규, 해지, 변경) 신청사항은 당월 자동이체신청 마감일까지 처리된 경우 당월분부터 적용되며, 해지 시에는 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단, 납부완료 또는 사망, 노령연금 지급결정, 반환일시금 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직권으로 해지 처리합니다.
 - 출금은 해당 납부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의 거래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,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.
 - 자동이체 납부자 정보(납부자명, 주민등록번호, 거래금융기관명, 계좌번호 등)는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.

처리절차

